

(공시보고서 표지 - 공통)

주요 경영상황 공시

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2009년 6월 9일

금융투자협회 귀중

회 사 명 : 도이치자산운용 (주)
(영문명) Deutsche Asset Management (Korea) Company Limited
(홈페이지) <http://www.deam-korea.com>

본 점 소 재 지 : 서울 종로구 서린동 33번지 영풍빌딩 19층
(전 화) 02-724-7400

대 표 이 사 : 신 용 일, 김 태 형

담 당 임 원 : (직 책) 준법감시인
(성 명) 정 진 권 (전 화) 02 - 724 -7460

작 성 자 : (직 책) 부장
(성 명) 장 은 정 (전 화) 02 - 724 -7461

제 출 이 유 :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-59조에 의한 주요 경영상황

※ 본 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상황 공시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, 동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1호바목, 같은 항 제2호다목, 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4호라목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-59조에 의한 『법정공시사항』으로 그 내용에 허위,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제1항제15호에 의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소송 등의 제기·신청

1. 사건의 명칭	구상금 청구의 소
2. 원고·신청인	도이치자산운용(주)
3. 청구내용	<p>청구취지 : 피고는 원고에게 1,453,004,252원 및 위 금원 중 1,430,644,895원에 대해서는 2008. 11. 1.부터, 22,359,357원에 대해서는 2008. 11. 7.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.</p> <p>청구이유 : 피고는 “도이치 DWS 프리미어 브라질(Brazil) 주식투자신탁”(이하 “모투자신탁”) 및 이의 자투자신탁과 멀티클래스펀드들의 수탁회사인 하나은행으로서 모투자신탁이 취득한 워런트의 분할 사실 통지의무 등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모투자신탁 등에서 기준가격 산정의 오류가 발생하였으나 이로 인해 발생한 수익자 및 모투자신탁 등의 손실액을 자산운용사인 원고가 지급함으로써 구상금을 청구함.</p>
4. 관할법원	서울중앙지방법원
5. 향후대책	-
6. 제기·신청일자	2009.06.09
7. 확인일자	2009.06.09
8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	